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45
----------	-----

제출연월일 : 2009. 2.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내 고용 창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이전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연수원, 시설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연수원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연구소, 연수원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유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각종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특별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바. 기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지원금액 결정후 예산 반영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9. 1. 23. ~ 2. 12.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기업”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공장시설,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연수원”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6.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기타 기업”이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제60조의2제1항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8.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개별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문화산업 관련 기업
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4. 연구소 또는 연수원

②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각각 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은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시설투자 완료일 중 가장 최근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실시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임대료 지원은 임대료의 100분의 25 범위안에서 임대계약기간동안 기

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본사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

2. 기존공장의 시설·장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체비·운반비 및 설치비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 본사, 공장시설, 연구소, 연구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장시설 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자를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10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이전·사업화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 1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사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기업
3.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성장산업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기타 기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기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용지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및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 지원)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자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등)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업유치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마케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서비스업 및 영화산업을 포함한다.	②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1항의 사업서비스업과 영화산업은 공장시설에 사업장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서비스업 중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서 투자금액이라 함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문화산업 관련 기업 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4. 연구소 또는 연수원 ②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각각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은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시설투자 완료일 중 가장 최근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실시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임대료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임대료 지원은 임대료의 100분의 25 범위안에서 임대계약기간동안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5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본사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 본사에 근무하는 3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공장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장에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공장의 시설·장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체비·운반비 및 설치비 	<p>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②----- -----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로 ----- -----</p> <p><삭제></p> <p>③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금액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p>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유치기업이 본사, 공장시설,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장시설 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②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p> <p>< 삭제 ></p>
<p>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p> <p>-----</p> <p>-----</p> <p>-----</p> <p>②고용보조금-----</p> <p>-----</p> <p>-----</p> <p>-----</p> <p>경우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p> <p><신설></p>	<p>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기업</p> <p>3.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성장산업기업</p> <p>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p> <p>②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p> <p>제12조(기타 기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기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⑥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2.28>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登記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